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특정감사 결과보고(○○○ □□□)

2016. 11.

LX 감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목 차

I.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근거	1
II. 실시개요	2
1. 감사반 편성	2
2. 감사기간	2
3. 감사대상	2
4. 감사중점사항	3
5. 감사방법	3
III. 현황	4
1. 기요기 ○○○ 지 관련 근거	4
2. 기요기 ○○○ 지	4
3. 2016년 기요기 ○○○ 지 현황	4
IV. 조사내용	5
V. 감사결과	13
1. 조사결과	13
2. 감사자 의견	15
3.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18
4. 조치의견	19
V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24
VII. 행정사항	24

I.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기요프기 0000 시스템 운영 및 0000 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기요프기 0000(이하, 0000이라 함)을 기드 0000하고 있다는 내부 민원이 사내 인트라넷으로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0000 기드 0000 제발방지와 공직복무기강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2. 감사근거

- 기요프기 0000 0000 행위 조사 요청
 - 2016. 9. 30. 상임감사 e-메일로 접수

○ 내부신고 요지

- 정부에서나 본사에서 00행위 금지를 시달하였음에도 00행위를 00하고 있음(12개 00본부 공통)
- 지역본부별로 실태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4조(특정감사의 실시)
 - 민원신고사항 및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기요프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기요프기 0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기요프기 00), 「2016년도 0000000000 예산집행지침」
- 기요프기 0000 시스템 운영 및 0000 행위 금지 요청
 - 00000000 제도기획과-341(2011. 8. 29.)
- 기요프기 0000000000 계획(안) 및 0000 금지 통지
 - 경영관리부-2578(2014. 7. 18.)

II. 실시 개요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장: 감사2부장 이000
- 감사반원: 수석팀장 김000 외 13명

2. 감사기간

감사사항	구분	감사기간	비고
기요프기 0000 기드 0000	사전조사	2016. 10. 12. ~ 10. 14. 2016. 10. 17. ~ 10. 21.	
	본 감사	2016. 10. 24. ~ 11. 14.	

3. 감사대상

- 사전조사
 - 전국 11개 00본부 중 24개 기관(1개 00본부와 23개 지사)
- 본 감사(3개 00본부 30개 지사)
 - 3개 00본부(000000, 000, 000지역본부) 중 2015년도 기요프기 결과 *, !, &, % 0000 받은 직원(257명 중 248명 / 파견, 교육, 휴가 등 9명 제외)

연번	기관명	조사대상 직원 수	수감직원 수
합계	3개 00본부 30개 지사	257명	248명
1	0000지역본부 7개 지사	54명	50명
2	0000지역본부 11개 지사	87명	83명
3	0000지역본부 12개 지사	116명	115명

○ ○○○ 기대 목표를 직접 추진한 지역○니본부장(총11명)

* ○○○지역본부 제외(2015년도 기표기 결과 @대기)

소 속	대상자	소 속	대상자
○니지역본부 ○니지사	국토정보직5급 임○○	○니지역본부 ○니지사	국토정보직5급 전○○
○니지역본부 ○니지사	국토정보직5급 김○○	○니지역본부 ○니지사	국토정보직5급 김○○
스니지역본부 ○니지사	국토정보직4급 김○○	스니지역본부 청주시지사	국토정보직5급 허○○
스니지역본부 대전시지사	국토정보직5급 정○○	스니지역본부 시지사	국토정보직5급 전○○
스니지역본부 광주시지사	국토정보직4급 황○○	스니지역본부 ○니지사	국토정보직5급 강○○
스니지역본부 창원시지사	국토정보직5급 정○○		

○ ○○○○ 기대 목표 달성률 100% 달성

① 4. 감사 중점사항

- ○○○ 기대 목표 사실여부 확인
- ○○○ 목표 모의 여부와 직원들의 동의 방법
- 목표를 주관한 직원 확인 및 목표 방법
- ○○○ 기대 목표의 위법성 인지여부 등

② 5. 감사방법

- ○○○ 기대 목표와 관련하여 질문서에 따른 답변서 징구
- 문답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수집
- 기타 조사대상 직원의 경우 필요 시 경위서 징구

Ⅲ. 현황

1. 기표기 ○○○ 기 관련 근거 【붙임 2】 참조

- 「기표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기표기 ○니)
 - 경영목표와 기표기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표기 ○니
- 「기표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기표기 ○니)
 - 로니니부장관은 ○니결과에 따른 ○○○ 기표기를 결정 등의 후속조치
- 「2016년도 로니니·로니니기관 예산집행 지침」
 - ○○○ 기표기에 관한 초도화 된 내부기준 마련 및 초도 수준 강화

2. 기표기 ○○○1)2) 기

- 2015년도 기표기 결과 !대기 달성
- 「로니니·로니니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예산 소요액 설정
- 정부기표기 ○○○ @%(84%)와 자체○○○ 100%를 합산한 180% (184%)를 @대기 기준으로 함
- 내부 기표기 ○니 결과를 기준으로 본사·국토정보로니니·공간정보○○○ 각 로니니본부별 급여담당자가 개인별 ○○○ 산정 후 통지 및 기

<대기별 기 비율> (단위 : %)

등 급	*	!	@	&	%
내·외부 ○○○ 합계	214(218)	197(201)	180(184)	163(167)	146(150)
대기별 초도 기 비율	134	117	100	83	66

3. 2016년 기표기 ○○○ 기 현황

- 대상: 공사 전 임·직원 및 보조인력 / 기표일: 2016. 7. 29. / 기표액: 약 221억 원

1) 도입취지)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스타버를 부여하여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등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2) 의의) 전년도 업무에 종사한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표기를 반영하여 익 년 ○월말에 기표하는 금액

IV. 조사 내용

1차 조사 (사전조사)

□ 조사 개요

- 조사일: 2016. 10. 12.(수) ~ 10. 21.(금) 6일간
- 장소: 각 지사 사무실
- 대상: 해당 지사 직원 전체(지사장, 담당관 제외)
- 조사방법: 지사를 방문하여 질문서를 이용한 **표본 서면조사**³⁾
 - * ○○지역본부는 2016년 ○스결과 2개 지사 모두 '@ㄷㄱ'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결과

- 11개 모노본부 중 가급적 규모가 큰 24개 기관을 선정하여 ○○○ ㄱ ㄷ 모노모 사실 여부조사 실시
 - ○스모노본부 등 8개 모노본부(16개 지사) 표본 서면조사 결과 188명 중 123명(65%)이 모노모 사실 인정

❖ 질문에 의한 ○○○ ㄱ 모노모 인정 조사 결과표

횟수	조사 기간	대상기관	조사결과 (인정 / 응답)	비고
합계	3일	16개	123명 / 188명	인정 (65%)
1회	2016. 10. 12.	지사: 8개	63명 / 105명	
2회	2016. 10. 18.	지사: 1개	1명 / 1명	
3회	2016. 10. 21.	모노본부(3개 처): 1개, 지사: 6개	59명 / 82명	

3) 감사 기간이 경과 할수록 미리 **조직적인 부당행위 은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지역본부를 제외한 전 모노본부 동시단시간 내 사실 확인을 위해 표본조사 방법 적용

- ○스○스.스○.비즈지역본부에서는 ○○○ ㄱ 모노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8개 지사)
- 질문서 답변 시 모노모 인정이 60% 이상 나타난 8개 모노본부는 조직적으로 모노모가 실행 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간주
- 모노모를 인정하지 않은 3개 모노본부는 타 지역으로 진출된 일부 직원들이 모노모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사전에 불인정하기로 이미 답합한 것으로 판단
- 1차 조사 시 ○○○ ㄱ 모노모 사실을 불인정했던 3개 모노본부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조사(2차 조사) 실시

1차 조사는 현장 직원들의 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질문에 의한 답변 방식을 선택하였고 각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함

③ 2차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일: 2016. 10. 24.(월) ~ 10. 28.(금) 5일간
- 장소: 해당 모노본부 사무실(별도 감사장 설치)
- 대상: ○스○스.스○.비즈지역본부에서 *!&%ㄷㄱ를 받은 직원
 - * 1차 조사에서 모노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노본부 전 지사를 대상으로 재조사 실시
- 조사방법: 문답에 의한 **대면조사**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그 후 ○○○ 실시

* 현금으로 그치는 경우, 전체를 다 그칠 때까지 모아 두지 않고 바로 바로 ○○○ 함

- ○○○지역본부는 ○○○ 그 ○○○ 참여직원 중 *!○○를 받은 직원의 40% 이상이 ○○○금을 입금하지 않아 ○○○ 추진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며, **ㅂㅂㅂ지역본부**도 *!○○를 받은 직원 중 일부 직원이 ○○○금을 입금하지 않아 ○○○를 못하고 통장에 보관중임을 확인

- 11개 ○○○본부 중 9개 ○○○본부에서 2015년도 ○○○이 ○○○되었음.

- 특이사항은 조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문답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문답내용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구두로 인정하였으나 11명 전원이 문답서에는 서명을 거부함.(지역본부 사업처장 또는 운영지원처장 등을 입회시켜 문답의 객관성 확보)

※ 주요 조사 내용은 【붙임 3】 참조

4차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일: 2016. 11. 7.(월) ~ 11. 8.(화) 2일간
 - * 연수교육자 1명별도 문답조사 실시(11. 11.)
- 장소: 본사(별도 감사장 설치)
- 대상: 3차 조사에서 ○○○ 관련 내용은 인정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한 지역○○본부장 11명(전원)

○ 조사방법: 문답에 의한 **대면조사** (추가 조사)

- 3차 문답에서 집단적으로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기존 답변의 이상 유무와 추가 확인 사항 문답(○○○ 주도 기구 및 ○○○금 계산 등), 문답서 서명

□ 조사결과

- 조사대상자 11명 전원, ○○○ 사실 모두 인정 재확인(100%)
- **ㅂㅂ**가 주관(2016. 6월 末 ~ 7월 初경)한 ‘운영위원 및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ㄴㅇ장 차ㅇㅇ**이 의결하였다고 종전 답변 보다 구체적으로 모의 시기와 장소 답변
 - 11명 중 8명이 운영위원 및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답변 하였으며 2명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 * 3차 문답에서는 **ㅂㅂ**가 주관한 대의원대회에서 ○○○ 그 ○○○가 의결되었다고 답변
- ○○○ 결정금액까지 **ㅂㅂ**에서 계산하여 지역본부에 제공하였다고 답변(8명/11명)
 - * 3차 문답에서는 ○○○ 그 ○○○ 결정금액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그칠일수, **ㄱ**, **ㄱ**액 등)만 **ㅂㅂ**로부터 제공 받았다고 답변
 - ○○○ 그 ○○○ 결정금액 계산의 다른 답변
 - ㅂㅂ**) 지역본부의 특성상 **ㅂㅂ**에서 기초자료(그칠일수, **ㄱ**, **ㄱ**액 등)를 제공받아 지역본부 자체 규칙에 따라 직접 계산 후 ○○○
 - ㅂㅂ**) 자발적으로 ○○○금을 낸 사람만 가지고 ○○○를 하는 것이므로 **ㅂㅂ**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내려 보내진 않았음
 - ㅂㅂㅂㅂ**) 동의하지 않은 직원을 제외하고 ○○○ 그 ○○○를 위한 금액 산

출을 비즈에 부탁하여 받음

- 조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문답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2016. 11. 7. ○스○스 ㄴ○장 차○○이 감사 수감 전 문답서에 서명을 거부하라고 사전에 지시
 - 7명이 ㄴ○장 지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하였고, 3명⁵⁾은 본인의지, 1명⁶⁾은 문답서에 서명하는 것은 ○○○ ㄱ○ㄱ○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서명 거부

5차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일: 2016. 11. 14.(월) 1일간
- 장소: 본사 5층 회의실(별도 감사장 설치)
- 대상: ○스○스 ㄴ○장 국토정보직4급 차○○
 - 각 지역○ㄴ본부 차원이 아닌 비즈에서 ㄱ○ㄱ○ 하도록 모의하여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 ㄱ○ㄱ○가 일제히 추진됐다는 진술이 지배적임에 따라 관련 책임자(○스○스 ㄴ○장) 조사
- 조사방법: 문답에 의한 **대면조사**

5) ㅈ비지역본부 ㅅ시지사 국토정보직4급 김○○, ㅂ비지역본부 대전ㅂ비지사 국토정보직5급 정○○, ㅈ비지역본부 광주ㅂ비지사 국토정보직4급 황○○

6) ㅂ비지역본부 ㄸ비지사 국토정보직5급 전○○(11. 7. 연수교육중이라서 ㄴ○장 차○○이 서명을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자리에는 없었음)

□ 조사결과

- 비즈 주관의 ㄱ○ㄱ○ 주도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 나타남에 따라 모의·주도한 책임자에게 감사 개시 통보
 - * ‘특정감사실시 통보’ (2016. 11. 10.)
- 그러나 그동안 본 감사에 대하여 사전에 사안의 중요성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하였으며,
- 감사통보에 대하여 ㄴ○장 명의의 ‘특정감사 실시 중지 요청 문서 발송’과 동시에 사내 게시판에 ‘성명서’ 게시
 - 감사 거부 및 감사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사(감사거부 및 압력행사)
- ○스○스 ㄴ○장 국토정보직4급 차○○이 2016. 11. 14.(월) 14:00까지 수감에 불응하여 2차 통보 발송
 - ‘감사 수감협조·재통보’(2016. 11. 14. 14:08)
- 결국 국토정보직4급 차○○(ㄴ○장)은 2회에 걸친 감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불응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감을 거부함⁷⁾

7) 2016. 11. 14. 10:00 ~ 18:05까지 감사2부장 외 2명이 감사장에 채실 중이었으나 불참하였음

V. 감사결과

㉞ 1. 조사결과

- 버스 주도의 ○○○ 모의 등 위규 부당행위
 - 2016. 6. 末 ~ 7월 初 경 버스가 주관한‘운영위원 및 본부장연석회의’에서 △장 주도로 ○○○을 △△△하기로 결정
 - 버스에서는 △△△을 계산한 내역서를 전국 각 지역△△본부에 배포한 후 전화 또는 버스에서 주관하는 ○○○ 회의에서 ○○○ △△△ 결과 확인
 - 지역△△본부장은 버스의 △△△ 결정에 따라 2016. 7. 29. △△△○○○ △△△과 동시에 △△△ 실행
- 버스로부터 받은 ○○○ △△△금액 내역은 지역△△본부장이 직접 *N*사내 메일 등으로 △△△ 대상 직원들에게 보냈거나 지사의 조합 간부들을 통해 전달하는 등 △△△ 내역을 조직적으로 알림
- ○○○ △△△ △△△ 방법은 @△△△ 기준으로 *!△△△를 받은 직원들에게 △△△금액을 대부분 지역△△본부장 통장으로 이체 받아서 &△△△를 받은 직원들에게 계좌이체
 - * 일부 작은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이 직접 현금 수납 후 △△△ 실시
- ○○○ 차○○(△△△)은 ‘운영위원 및 본부장연석회의’에서 2015년도 △△△○○○○ △△△△△를 주도한 이후 전 지역△△본부장들이 일제히 ○○○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등 ○○○ △△△를

주관한 것을 확인

- 특히, 금년은 △△△△△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 간 진통 끝에 도입이 결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경시하듯 조직·계획적 △△△를 바로 강행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더욱 중함

○ 감사방해 행위

- ☑ ○○○ △△△는 정부 및 공사에서 여러 차례 금지한 행위로서 금 번 감사는 적법성과 합규성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선동함

- 2016. 10. 24.(월)

각 지역 감사장에 버스 전임자를 보내서 “축소 조사 요구 및 조합 요구 거부 시 강경기조를 암시”하는 등 감사 방해

- 2016. 10. 25.(화)

-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지역본부 ○○○ @!N%에 금 번 특정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려 직원들을 선동하고 감사장에서 직원들의 감사내용 녹취허용 요구와 감사사항(대상자 수, 문답 소요시간 등)에 대해 항의하는 등 감사 방해

- △△△ 차○○ 명의로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발송 “지금 감사의 행태는 인권탄압이며 양심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등 마치 감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처럼 호도

- 2016. 11. 7.(월)

○○○○ △△△ 차○○은 본사 감사장에서 감사실 주관으로 ○○○ △△△△△를 주도한 지역△△본부장들의 추가조사 전에 버스 사무실에 모인 지역△△본부장들에게 “문답서에 서명을 거부하라고 사전 지시”

- 2016. 11. 11.(월) _ 서면 통보

○○○○ △△△ 명의의 ‘특정감사 실시 중지 요청’에서 “부당한 감사행위를 즉각 중지”, “계속 진행시에는 법적 대응”

- 2016. 11. 11.(월) _ 성명서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

○ 감사거부 행위

☑ 모의 주도한 책임자에게 감사 수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문서 발송’
 및 공사 위랜드 및 조합 홈페이지에 ‘성명서’까지 공지하는 등 감사 거
 부

- 2016. 11. 14.(월)
 ○○○○ 노○장 차○○은 특정감사실시 통보(2016. 11. 10.)와 감사 수감협조·
 재통보(2016. 11. 14. 14:08)를 통해 ‘기일 내 정당하게 조사에 응하기 바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처분됨’을 알렸으나 “수감에
 불응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음”⁸⁾

2. 감사자 의견

□ ○○○ 모모 권

- 경영성과 ○사는 ○사 대상 기관(부서)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측정·○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처치하여 보
 상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과 업무개선 촉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
 률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범국가적인 제도이다.
- 내부적으로 ○○○ 기드 모모 행위자체는 결국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형식만 유지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서 2011년

8) 2016. 11. 14.10:00 ~ 18:05까지 감사2부장 외 2명이 대기하였으나 불참하였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기드 모모 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이사회 결의마저 무시한 행위이다.

- 아울러 기드○○○○ 기드 모모는 전 국가적 이슈가 되어
 잘못된 행동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점과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시간만 때우기 식의 안일한 태도로 근무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서 공사 전체의 업무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 한편 최근 감사원은 2016. 3. 14. 부터 같은 해 4. 8.까지 20일
 간 !(가칭) 등 4개 호공사에 우리 공사의 본 감사와 같은 사안으
 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기드○○○○ 모모를 모의하고 조직
 적·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칭)공사 ○○○○ 노○장과 @(가칭)공사 ○
 ○○○ 국장은 중징계 처분요구 하였고, 가담한 직원들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요구를 한 사례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노○장(차○○)은 그동안의 모모 금지
 문서 시달은 물론 금년 정부의 저기드○○○○ 도입확대 권고(2016. 1. 29.)
 와 공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결의(2016. 5. 31.)를 비롯이라도 하
 듯 무시하고, ○○○○ 운영노 및 본부장연석회의에서 ○○○ 기드 모모
 모모를 주도하고 기드 모모 결정금액을 계산한 내역서를 각 지역본부 ○
 ○○○에 배포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전국 지역본부에 기드○○○○
 기드 모모를 지시하였다.

□ 감사 방해권

○ 1차 조사에서 ○○○ 기대 □□□ 사실을 불인정했던 3개 지역본부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지역 감사장에 보조 전임자를 보내서 “축소 조사 요구 및 조합 요구 거부 시 강경기조를 암시”하는 등 감사 방해, 본사 감사장에서 감사실 주관으로 ○○○ 기대 □□□를 주도한 지역○본부장들의 추가조사 전에 보조 사무실에 모인 지역○본부장들에게 “문답서에 서명을 거부하라고 사전 지시”하였다.

○ 또한 ○사○사 노장 명의의 ‘특정감사 실시 중지 요청’에서 “부당한 감사행위를 즉각 중지”, “계속 진행시에는 법적 대응”,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는 성명서를 공사 위랜드 및 ○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감사활동을 방해하였다.

□ 감사 거부권

○ 지역○본부장들을 조사한 결과 각 지역○본부 차원이 아닌 보조에서 □□□ 하도록 결정하여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 □□□가 일제히 추진됐다는 진술이 지배적임에 따라 관련 책임자(○사○사 노장) 조사가 당연하였으나 조사일 변경 등의 개인적 일정협의 차원이 아닌 문서로 감사 진행의 노골적 협박과 감사거부로 공사 조직의 기강을 무색하게 하였다.

○ 따라서 관련 책임자 조사를 위해 특정감사실시 통보(2016. 11. 10.)와 감사 수감협조·재통보(2016. 11. 14. 14:08)를 통해 ‘기일 내 정당하게 조사에 응하기 바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 조사된 내용

을 근거로 처분됨’을 알렸으나 “수감에 불응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등 적법성과 합규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였다.

3.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회의일시: 2016. 11. 23.(수) 16:00 ~ 17:30

○ 회의장소: 본사 3층 감사실

○ 참석위원: 최○○, 김○○, 이○○, 주○○, 최○○, 이○○, 김○○, 송○○, 이○○, 정○○(간사) / 총10명

○ 심의결과: ○사○사 국토정보직4급 차○○(중징계)

○사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5급 임○○ 등 11명(경징계)

○ 회의내용 요약

- 주요사안은 3가지로 구분
 - ○○○ □□□, 감사 방해, 감사 거부
- 감사원에서 ○○○○○공사 등 3개 ○○○공사 ○○○ □□□ 감사 결과 조직적·주도적 참여자에게 중징계 처분요구, 그밖에 경징계 이상 처분 요구한 사례가 있음(감사기간: 2016. 3. ~ 4.)
- 타 기관 사례에서도 중징계, 감사 방해도 중징계감이라고 보이며 감사거부까지 한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공사 조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
- ○노 노장이 떳떳하다면 감사에 응해서 당위성을 진술했어야 했는데 거부한 것은 또 다른 큰 잘못
- 고의성도 다분하고 비위도 중해서 중징계 대상
-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우리 공사와 유사한 사안으로써 참고하여야 할 것임
- 조직 구성원으로서 사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까지 하는 무시행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 시 강경기조를 암시하는 등 감사 방해와 압력행사를 하였으며,
- 본사 감사장에서 감사실 주관으로 ○○○ 기고 모모모를 주관한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추가문답(2016. 11. 7. ~ 8.)에 앞서 버스 사무실에 모인 지역○○본부장들에게 “문답서에 서명을 거부”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 활동을 방해하였음.
 - 또한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문답서 작성)⁹⁾에 따른 ‘특정감사실시 통보’(2016. 11. 10.)에 대해 노장 명의로 “부당한 감사행위를 즉각 중지 할 것과 법적 대응” 관련 ‘특정감사 실시 중지 요청’ 문서 시행 및 사내 인터넷과 ○○○ 홈페이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2016. 11. 11.)하였으며,
 - ‘감사 수감협조·재통보’ (2016. 11. 14. 14:08)를 통해 “기일 내 정당하게 조사에 응할 것을 재차 알렸으나 수감에 응하지 않고 감사 거부
 - 따라서 조직·계획적으로 ○○○을 모모모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 도입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적법성과 합규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하였으며,
 - 두 차례에 걸친 감사통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등 「○○○○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2016년 모모모.모모모

9)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된 자는 그 기한까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기관 예산집행 지침」과 모모모부 “○○표기 ○○○ 카드운영 및 ○○○ 행위 금지 요청”[제도기획과-341(2011. 8. 29.)]
- 그리고 공사의 “○○표기 ○스터브 쓰기 계획(안) 및 ○○○ 금지 통지” [경영관리부-2578 (2014. 7. 18.)], 「복무규정」,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 「인사규정」 제50조 제4호¹⁰⁾ 및 「징계규칙」 제8조 [별표 1] 3_가. 복무 질서문란(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3_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징계 조치 하고자 함.
 - 또한 ○○○지역본부 ○○○본부장 모○○지사 국토정보직5급 임○○ 등 11명은 ○○○표기 ○○○을 기고 모모모하기로 모의하여 ○○○주관의 ‘운영위원 및 본부장 연석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도 ○○○표기 ○○○ 기고 모모모를 조직·계획적으로 추진하였고,
 - 버스로 부터 받은 ○○○ 모모금액 내역서를 지역본부 ○○○본부장이 해당 지사로 배포 또는 지역 본부 간부들을 통해 전달하거나 *!디기를 받은 직원들에게 *N* 또는 사내 메일로 알리는 방법으로 ○○○ 회수금액을 통지하였으며,

10) 직무의 내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ㄷㄱ 기준으로 *!ㄷㄱ를 받은 직원들에게 〇〇〇 ㄱㄷ ㄹㄹㄹ금액을 지역〇ㄴ본부장 또는 총무 통장으로 이체 받아서 &·%ㄷㄱ를 받은 직원들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현금 수납 후 ㄹㄹㄹ하고, 〇〇〇 ㄱㄷ ㄹㄹㄹ 결과를 ㄴㅈ에 전화 또는 ㄴㅈ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 시 구두 보고하였음.

- 한편 〇〇〇 ㄱㄷ ㄹㄹㄹ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한 문답조사에서 2회 모두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일부 지역 본부에서는 지역본부 〇ㅅ〇ㅅ @!N%에 금 번 특정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려 직원들을 선동하고 감사장에서 직원들의 감사내용 녹취요구와 감사사항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적법성과 합규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 「ㄱㄱㄱㄱ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2016년 ㄹㄹㄴ·ㄹㄹㄴ기관 예산집행 지침」과 ㄹㄹㄴㄴ부 “ㄱ〇표ㄱ 〇〇〇 ㄷ운영 및 〇〇ㄹㄹ 행위 금지 요청”[제도기획과-341(2011. 8. 29.)],

- 그리고 공사의 “ㄱ〇표ㄱ 〇ㅅㅌㅌ ㅈㄱ 계획(안) 및 〇〇ㄹㄹ 금지 통지” [경영관리부-2578 (2014. 7. 18.)], 「복무규정」,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였

음.

- 따라서 「인사규정」 제50조 제4호11) 및 「징계규칙」 제8조 [별표 1] 3_가. 복무·질서문란(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 행위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징징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V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자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2	〇 ㅅ 〇 ㅅ 국 토 정 보 직 4 급 차 〇 〇	복무규정 위반(〇〇〇 ㄱㄷ ㄹㄹㄹ)			중징계	20일	이〇〇 외 14명
2-2	〇 ㅅ 지역 본 부 ㄹ 〇 지 사 국토정보직5급 임 〇 〇 등 11인	복무규정 위반(〇〇〇 ㄱㄷ ㄹㄹㄹ)			경징계	20일	이〇〇 외 14명

VII. 행정사항

○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e-감사시스템 등록, 홈페이지 경영공시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부. 끝.

11) 직무의 내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기그 로로를 주관한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추가문답(2016. 11. 7. ~ 8.)에 앞서 비즈 사무실에 모인 지역○○본부장들에게 “문답서에 서명을 거부”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 활동을 방해하였다.

또한 「감사기준시행세칙」 제29조(문답서 작성)¹²⁾에 따른 ‘특정감사실시 통보’ (2016. 11. 10.)에 대해 노○장 명의로 “부당한 감사행위를 즉각 중지 할 것과 법적 대응” 관련 ‘특정감사 실시 중지 요청’ 문서 시행 및 사내 인트라넷과 ○스○스 홈페이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2016. 11. 11.)하였으며, ‘감사 수감협조·재통보’ (2016. 11. 14. 14:08)를 통해 “기일 내 정당하게 조사에 응할 것을 재차 알렸으나 수감에 응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조직·계획적으로 ○○○을 로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기그기그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2016년 로로·로로기관 예산집행 지침」과 로로노부 “기표기 ○○○ 트운영 및 ○○○ 행위 금지 요청”[제도기획과-341(2011. 8. 29.)]과 공사의 “기표기 ○스트비 지그 계획(안) 및 ○○○ 금지 통지” [경영관리부-2578 (2014. 7. 18.)], 「복무규정」,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인사규정」 제50조 제4호¹³⁾ 및 「징계규칙」 제8조 [별표 1] 3_가. 복무·질서문란(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 및 3_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2)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된 자는 그 기한까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13) 직무의 내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스처장)은 조직·계획적으로 ○○○을 로로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 도입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적법성과 합규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감사통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등 「기그기그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6년 로로·로로기관 예산집행 지침」 및 「복무규정」,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감사기준시행세칙」을 위반한 ○스○스 국토정보직4급 차○○을 「인사규정」 제51조와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2	감사자	이○○ 외 14인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1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처)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 ㄱ ㄴ ㄷ) 위반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등 11개 ㄴㄷ본부

징계 대상자

소 속	대상자	소 속	대상자
○○지역본부 ㄴㄷ지사	국토정보직5급 임○○	○○○○지역본부 ㄴㄷ지사	국토정보직5급 전○○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5급 김○○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5급 김○○
ㄱㄷ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4급 김○○	ㄱㄷ지역본부 청주ㄴㄷ지사	국토정보직5급 허○○
ㄴㄷㄱㄷ지역본부 대전ㄴㄷ지사	국토정보직5급 정○○	ㄴㄷ지역본부 ㄱㄷ지사	국토정보직5급 전○○
ㄱㄷㄱㄷ지역본부 광주ㄴㄷ지사	국토정보직4급 황○○	ㄴㄷㄱㄷ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5급 강○○
ㄴㄷ지역본부 창원ㄱㄷ지사	국토정보직5급 정○○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은 2015. 10. 1. 부터 현재까지 각 지역본부 ○○○ 업무를 총괄하며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ㄱㄱㄱㄱ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2016년 ㄴㄴㄴㄴ·ㄴㄴㄴㄴ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ㄴㄴㄴㄴ·ㄴㄴㄴㄴ기관의 ㄱㄱㄱㄱ을 ○○ 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른 인사·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

ㄱㄱㄱㄱ을 결정하고, ○○○ 총액 범위 내에서 ○○○ ㄱㄱㄱ에 관한 ㄱ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ㄱ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ㄴㄴㄴㄴ부[제도기획과-341(2011. 8. 29.)]와 공사[경영관리부-2578(2014. 7. 18.)]에서는 ‘ㄱㄱㄱㄱ ○○○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하는 행위 금지를 철저히 준수’ 하도록 시달하였다.

「복무규정」 제2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공사 임직원은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관련 법률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ㄱㄱㄱㄱ ○○○을 ㄱㄱ ㄴㄴㄴㄴ하기로 모의하여 ○○○ 주관의 ‘운영위원 및 본부장 연석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도 ㄱㄱㄱㄱ ○○○ ㄱㄱ ㄴㄴㄴㄴ를 조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ㄴㄴㄴㄴ로 부터 받은 ○○○ ㄴㄴㄴㄴ금액 내역서를 지역본부 ○○○ 본부장이 해당 지사로 배포 또는 지역 본부 간부들을 통해 전달하거나 *·!ㄱㄱ를 받은 직원들에게 *N* 또는 사내 메일로 알리는 방법으로 ○○○ 회수금액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ㄱㄱ 기준으로 *·!ㄱㄱ를 받은 직원들에게 ○○○ ㄱㄱ ㄴㄴㄴㄴ금액을 지역○○본부장 또는 총무 통장으로 이체 받아서 &·%ㄱㄱ를 받은 직원들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현금 수납 후 □□□하고, ○○○ 기 □□□ 결과를
버스에 전화 또는 버스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 시 구두 보고하였다.

한편 ○○○ 기 □□□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한
문답조사에서 2회 모두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지역본부
○○○ @!N%에 금 번 특정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려 직원들을 선동하고
감사장에서 직원들의 감사내용 녹취 허용요구와 감사사항(대상자 수, 감사 소요시간)에
대해 항의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을 □□□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 도입 취지를 훼손하였으며,
적법성과 합규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 「기기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2016년 □□□·□□□기관 예산집행 지침」과 □□□부 “기표기 ○○○ 츠운영
및 ○○○ 행위 금지 요청”[제도기획과-341(2011. 8. 29.)]과 공사의 “기표기 ○스티브
지 계획(안) 및 ○○○ 금지 통지” [경영관리부-2578 (2014. 7. 18.)], 「복무규정」,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감사기준시행세칙」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50조 제4호¹⁴⁾ 및 「징계규칙」 제8조
[별표 1] 3_가. 복무·질서문란(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 행위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스처장)은 ○○○을 □□□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적법성과 합규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등 「기기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6년 □□□·
□□□기관 예산집행 지침」 및 「복무규정」,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스○스 국토정보직5급 임○○ 등 11명을 「인사규정」 제51조와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4) 직무의 내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